

# 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15,945,415	18,478,362
일반회계	538,102,976	16,143,089
특별회계	77,842,439	2,335,273
기타특별회계	77,842,439	2,335,273
상수도특별회계	21,377,074	641,312
청사건립특별회계	20,411,331	612,34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759,897	22,797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35,883	7,076
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	35,058,254	1,051,74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없다".

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26,541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6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